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89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송기헌・안태준・이연희

문진석 • 맹성규 • 주철현

한민수 • 박균택 • 허 영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선접수된 이의신청이 후속 이의신청자의 의견과 충돌하여분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 향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국무조정실에서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 한 개별 평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

법률 제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이의신청서가 접수된"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이의신청을 받은"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 재조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적소관청에서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등 사업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 ①·② (생 략)	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③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
청) ①·② (생 략)	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③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u>.</u>
<u><신 설></u>	제39조의2(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하여 매년 지적소관청에
	서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
	진실적 등 사업현황을 평가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 업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